

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- 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2회 임시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'95. 3. 27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송 원 호)

가. 제안이유

- '95. 1. 5 개정 공포된 건축법중 개정법을 부칙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관계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본 조례 14조의 제목 "건축물의 높이제한"을 "건축물의 높이제한등"으로 하고,
- 동조 본문중 "건축법 제51조"를 "건축법 제51조, 동법 제53조, 동법 제59조"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시 건축법 제 51조(건축물의 높이제한)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확대하여 건축법 제51조(건축물의 높이제한)과 동법 제53조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및 동법 제59조(건축물의 열손실 방지)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4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.
- 관련자료 1부.